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3-3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4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폐지사유

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·육성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설치·운영하고 있으나 장학금 지원을 원하는 구민에 대한 충분한 지원에 한계가 있어, 장학기금 대신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사업을 확대·발전시키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존속시켜 운영 할 필요가 없기에 해당 조례 및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함

## 3. 폐지근거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
## 4. 폐지조례안 : 따로 붙임

## 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## 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3.3.21 ~ 2012.4.10 (제출된 의견 없음)
- 나.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(2013.4.18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학재단의 설립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의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기금의 잔액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립되는 장학재단에 출연한다.